

① 사업 연 도 . . . ~ . . .		최저한세조정계산서		② 상 호	
				③ 사업자등록번호	
④ 구 분		⑤ 감면 후 금액	⑥ 최 저 한 세	⑦ 조 정 감	⑧ 조정 후 금 액
⑩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					
소 득 조 정 금 액	⑩ 총 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				
	⑩ 필요경비 산입 및 총수입금액 불산입				
⑩ 차 가 감 소 득 금 액 (⑩ + ⑩ - ⑩)					
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특 별 비 용	⑩ 준 비 금				
	⑩ 특 별 상 각 · 특 레 자 산 감 가 상 각 비				
	⑩ 소 계				
⑩ 특 별 비 용 필 요 경 비 산 입 전 소 득 금 액 (⑩ + ⑩)					
⑩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					
⑩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중 필 요 경 비 산 입 액					
⑩ 이 월 결 손 금					
⑩ 차 감 소 득 금 액					
⑩ 「조 세 특 레 제 한 법」 상 소 득 공 제					
⑩ 소 득 공 제					
⑩ 과 세 표 준					
⑩ 세 율					
⑩ 산 출 세 액					
⑩ 최 저 한 세 { ⑩ × (45%, 3천만원이하는 35%) }					
⑩ 세 액 공 제					
⑩ 감 면 세 액					
⑩ 차 감 세 액					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70호서식)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.
2. ⑤란의 ⑫차감세액이 ⑥란의 ⑪최저한세보다 큰 경우에는 ⑦,⑧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3. ⑭차가감소득금액란: ⑤,⑥,⑧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⑥의 ⑩,⑪란: 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70호서식)의 ⑬준비금계란의 차감액 및 ⑭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5. ⑦의 ⑩,⑪란: 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70호서식)의 ⑬준비금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 및 ⑭특별·특례감가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을 옮겨 적습니다.
6. ⑧의 ⑩란: ⑦의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⑤,⑥,⑧의 ⑩란: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56호서식)의 ⑤3란의 한도초과액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8. ⑤,⑥,⑧의 ⑪란: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56호서식)의 ⑤2란의 해당 과세기간필요경비산입액의 합계란을 옮겨 적습니다.
9. ⑤의 ⑪란: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(별지 제71호서식)의 ⑪7란의 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0. ⑦의 ⑪란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(별지 제71호서식)의 ⑪8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1. ⑤의 ⑫란: 감면세액조정명세서(별지 제73호서식)의 ⑥란의 감면대상세액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12. ⑦의 ⑫란: 감면세액조정명세서(별지 제73호서식)의 ⑦란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13. ⑧의 ⑪,⑪,⑫란: 각각 ⑤의 ⑪,⑪,⑫란의 금액에서 ⑦의 ⑪,⑪,⑫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
14. ⑧의 ⑫차감세액은 ⑥의 ⑪최저한세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15. ⑤의 ⑪산출세액의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[별지 제40호서식(1)]의 ⑪9란의 "종합소득금액"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